

의안번호	제628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4년 7월 3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28
----------	-----

제출연월일 : 2024년 7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선정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안 제3조)
- 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안 제4조)
- 사업 자금의 차입 (안 제5조)
- 주주권의 행사 (안 제6조)
- 이사 지명권 (안 제7조)
- 정기보고 및 정관 (안 제8조, 제9조)
- 설립등기 (안 제10조)
- 공무원의 파견 등 (안 제11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출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위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출자”란 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도 외의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법인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에 관한 사업
2. 제1호에 따른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또는 인정되는 사업

제4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도와 군은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와 군의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도는 법인 설립자본금에 일정 부분 출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도와 군의 합산 비율이며, 도와 군의 분담비율은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④ 법인이 증자할 경우, 도와 군은 출자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⑤ 도와 군은 필요한 경우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자금의 차입) ① 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법인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이사 지명권) 도지사는 법인 이사회에 이사 1명 이상을 지명할 수 있다.

제8조(정기보고) 법인은 사업계획, 사업성과, 재무지표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법인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설립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등) 도지사는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한 대상
2. 제1호와 유사한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 제1호

○ 사 유

-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프로젝트별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상이하고, 그에 따른 출자금도 변동하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어려움.

○ 작성자 : 투자유치국 투자유치과장 조병철